

의안번호	2213525
의 퇴 인	윤영석 의원
회 답 일	2025. 10. 14.
추 계 번 호	25F5489

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에 출자한 내국법인의
수익배당금 익금불산입 및 해외 납부 세액공제의 출자비율 요건 하향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
1	안 제18조의4 제1항 (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액의 익금불산입)	○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위한 요건으로, 외국자회사에 대한 출자비율요건 완화 - (현행) 5% 이상 → (개정안) 1% 이상
2	안 제57조 제5항 (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)	○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에서 외국 납부 세액을 공제하기 위한 요건으로, 외국자회사에 대한 출자비율요건 완화 - (현행) 5% 이상 → (개정안) 1% 이상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8조의4 제1항 (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 의 익금불산입)	○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호 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57조 제5항 (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)	○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호 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내국법인이 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익배당금에 대해 익금불산입률(95%) 적용과 외국 납부 세액공제를 위한 요건으로 피출자외국법인에 대한 출자비율 요건을 5%에서 1%로 하향 조정함에 따라 법인세의 감소가 예상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출자비율별 익금불산입 및 외국납부세액 공제 적용 여부

출자비율	현행	개정안
5% ≤ 출자비율	수익배당금 95% 익금불산입 외국 납부 세액공제	수익배당금 95% 익금불산입 외국 납부 세액공제
1% ≤ 출자비율 < 5%	-	수익배당금 95% 익금불산입 외국 납부 세액공제
출자비율 < 1%	-	-

- 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익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및 외국 납부 세액공제 요건 완화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액을 추계하기 위해서는, 출자비율 1% 이상 5% 미만에 해당하는 자원개발사업을 하는 피출자외국법인으로부터 수령하는 수입배당금 규모 및 출자법인에 대한 과세정보가 필요하나, 현재 관련 정보가 부재함
-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익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및 외국 납부 세액공제 요건으로 피출자외국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을 5%에서 1%로 하향 조정하는 안에 대한 세수효과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 제1항 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Ⅳ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이유섭	백경엽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유섭	02-6788-4838	useuplee@assembly.go.kr